

## 한국과학기술원(KAIST) 총장후보자 지원자격 관련 규정

### □ 총장후보자의 자격(총장후보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)

총장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한다.

1. 과학기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교직원을 총괄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구비한 자
2. 과학기술원을 세계 일류 연구대학원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력과 실천력이 있는 자
3.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#### 한국과학기술원 인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3. 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
4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
5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